
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
- (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(2)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

☞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등록 장소 : 계성초등학교 교무실(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)

다. 등록 기간 : 2024. 3. 07.~3. 08.(09:00~16:00) (2일간)

라. 구비 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→공지사항 란에 탑재), 사진 1매 (3×4cm)

2. 위원 선거

가. 선거 일시 : 2024. 3. 13 (09:00~10:00)

나. 선거 장소 : 계성초등학교 바오로관

다. 선출 인원 : 학부모위원 4명

라. 선출 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.

마. 소견 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.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4. 3. 11.~3. 12 (교무실)
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4년 3월 6일

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